

의안번호	제 418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9월 일 (제 283회)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9년 9월 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8
----------	-----

제출연월일 : 2009년 9월 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07. 5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제명 변경

-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를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로 변경

○ 『외국인주민』 용어 반영(안 제2조)

- 거주외국인('06) → 외국인주민('07) → 이주민('08) → 외국인주민('08. 5 ~)

○ 외국인주민 지원범위 확대(안 제5조)

-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포함

○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등(안 제6조, 제7조, 제8조)

- “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 를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변경
- 민간위원(외국인주민 포함) 1/3이상 위촉 의무화 및 심의기능 부여

○ 『세계인의 날(5.20)』 및 『세계인주간』 일자 삭제 등(안 제16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주간 명시와 함께 기념행사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을 피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문화행사 개최를 위하여 삭제하였음(법무통계담당관실 사전협의)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생략(전부개정)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사회 적응과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도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도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도가 지원하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②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2장 시책위원회

제6조(시책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 및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개별시책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행정부지사, 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2. 충청북도교육청·충청북도지방경찰청·노동부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법무부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부서책임자
3. 충청북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4.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무관련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총괄 과장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

제14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세계인의 날) ① 도지사는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도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도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도의 예산 범위내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③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9조(명예도민) ① 도지사는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 ② 명예도민으로서의 예우와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42호], 시행일 2007. 7. 18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과 관련 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 2008. 3.22] [법률 제8726호, 2007.12.2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